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68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1928(昭和 3)년 10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9월 2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얼음[氷]의 항(項)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하고, 목재(木材: 당목[唐木], 명목[銘木] 류[類]를 제[除]하고, 포장용(包裝用) 상판[箱板·panel]을 포함함) 및 목재(5급[五級]의 것에 한[限]함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을 삭제(削除)함.

품목(品目)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급종별(扱種別)	임률(賃率)	기사(記事)
목재(木材: 당목[唐木], 명목[銘木] 류[類]를 제[除]하고, 포장용(包裝用) 상판[箱板·panel]을 포함함)	신의주(新義州), 단동[安東], 부령(富寧), 고부산(古茂山), 회령(會寧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	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, 부산진(釜山鎭)	차급(車扱)	4급(扱)의 것 2할(割) 감(減) 5급(扱)의 것 1할(割)7푼(分) 감(減)	본(本) 운임(運賃)은 승인운송점(承認運送店)의 환불운임계산액(還拂運賃計算額)에 가산(加算)하는 것으로 함
동(同)	동(同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동(同)	1할(割)3푼(分) 감(減)	동(同)